

# 다산장려금 내년까지만 지급 후 폐지, 거세장려금 내년 6월까지만 지급 후 폐지

## ◆다산장려금, 거세장려금 2003년도 시행지침

### 한우 다산장려금

#### 1. 목적

- 한우암소의 비육출하를 억제하여 송아지생산을 유도
- 한우번식 사업을 권장하여 한우사육 기반을 구축

#### 2. 시책 및 추진방향

- 송아지 산차에 따른 장려금의 차등지원으로 다산 유도
- 송아지생산안정사업과 연계한 다산장려금 지급으로 소 증식 효과 거양

#### 3. 연도별 지원계획

(단위:백만원)

구분	'92~'00년	2001년	2002년	2003년 (예산안)	2004년 이후	
사업량(천두)	60	136	118	129	없음	
사업비	보조	6,630	32,300	27,175	20,281	없음

#### 4. 2003년도 사업시행요령

##### 가. 다산장려금 지급대상 및 시기

##### ● 지급대상

- 송아지생산안정사업에 가입이 되고 3산이상 송아지를 생산하는 한우암소. 단, 송아지생산안정사업에 가입한 소 중 인공수정에 의하여 송아지를 생산하는 경우에만 해당
- 인공수정이 어려운(불임 1)의 도서·낙도지역은 자연종부에 의한 송아지생산시에도 다산장려금을 지급
- 쌍태이상 송아지 생산시 송아지 1마리만 생산한 것으로 간주

- 지급대상소 확인 방법

(3산 이상 산차확인)

- 소전산화사업조사표, 기초·혈통·고등등록증 등의 기록에 의하여 연령이 48개월령 이상인 경우는 치아감정 없이 장려금 지급대상으로 함

- 기초, 혈통등록우 및 고등등록우는 등록우관리 전산프로그램의 "등록우 개체조회 결과"를 출력하여 산차를 확인하되 유산의 경우에는 산차에 포함되지 않음(사산의 경우는 산차에 포함하나 장려금은 미지급)

- 기록에 의한 산차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암소의 우치가 유치(젓니)에서 영구치로 바뀌어 후 송아지를 생산한 경우 3산이상으로 확인

- 안정사업 참여후 3회이상 송아지생산 신고를 한 경우 생산신고 회수에 따라 산차 확인

(5산 이상 산차확인)

- 기록에 의하여 5산이상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

- 송아지생산안정사업에 참여 후 연령감정에 의하여 3산으로 인정받아 다산장려금을 받은 암소가 그 후 송아지생산을 신고하고 다산장려금을 지급받은 경우 장려금지급 횟수에 따라 산차증가 인정

- 지급시기

- 2002. 1. 1이후 3산 이상 송아지 생산시 지급

- 송아지생산시 안정사업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, 다만 전년도 안정사업 가입암소가 송아지 생산당시 2002년도 안정사업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안정사업 참여 계약 신청기간내 추후 가입시에는 장려금 지급

나. 지급금액(1회)

- 3-4산 : 150천원, 5산이상 : 200천원

## 5. 2004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안내

- '03. 12. 31일까지 생산된 송아지에 대해 지급후 사업종료

## 한우 거세장려금 지급

### 1. 목적

- 한우수소 거세장려로 쇠고기 품질개선을 통한 경쟁력 제고

### 2. 시책 및 추진방향

- 지역별로 자율적 한우사업추진체 구성을 유도하고 거세를 통한 품질고급화 동시 추진

- 생산자단체와 농가가 공동조직체를 구성하여 체계적인 한우사업을 추진하는 지역 및 농가에 대하여 거세장려금 지원
- 한우사업 추진의욕이 높은 지역 선별지원 및 경쟁환경 조성으로 한우산업 발전 촉진
  - 한우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추진 의지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지원
  - 지역내 생산자단체중 우수단체 중심으로 거세사업 추진

### 3. 연도별 지원 계획

(단위:백만원)

구 분	'92~ '00년	2001년	2002년	2003년 (예산안)	2004년 이후
사업량(천두)	51	109	84	42	없음
사업비	계	9,586	21,900	16,800	8,400
	보 조	6,710	17,520	15,120	7,560
	지방비	2,876	4,380	1,680	840

### 4. 2003년도 사업시행 요령

#### 가. 사업내용

- 지원대상자
  - 대상 시·군: 시·군별 한우산업발전협의회를 구성·운영하는 시·군
    - 번식농가, 비육농가, 조합, 한우협회, 가축인공수정사, 수의사, 소비자, 식육판매업자, 기타 한우관련 종사자로 한우산업발전협의회 구성
    - 한우거세, 한우개량농가 육성 등 한우관련 정책사업내용 협의
  - 대상자: 생산자단체를 중심으로 계획을 세워 한우사업을 추진하고 그 계획에 따라 송아지생산 안정사업 가입암소가 생산한 수소를 12개월령 이내거세하는 자(조합, 법인체 포함)
    - ※ 수소월령확인: 송아지 생산안정 사업 프로그램에서 송아지 출생일로 확인
    - 생산자단체: 조합(농협중앙회 포함), 한우협회, 영농조합법인, 계열화업체 등 포함하되 축산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대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
- 지원금액: 거세우 두당 200천원(축산발전기금 90%, 지방비 10%)
- 지원기간: '03.6.30일 까지 거세한 송아지에 대해 지급

#### 나. 사업추진기관

- 주관기관: 시·군(자치구 포함)
- 협조단체: 한우관련 생산자 단체

- 조합, 한우협회, 영농조합법인, 계열화업체 등이 시장·군수로 부터 한우 거세 사업협조단체로 지정받은 생산자단체

#### ■ 거세사업 협조단체 지정

- 거세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생산자단체는 한우사업에 참여 희망농가들을 조직화하여 회원으로 관리
  - 번식농가와 비육농가를 지정
  - 번식농가에서 생산된 수송아지는 비육농가에게 우선 판매
    - 암송아지도 우수한 개체의 경우 회원농가에 우선 판매
- 생산자단체는 농가에서 생산된 비육우를 일관 판매방안 강구
  - 지역별 한우고기 브랜드 개발 및 등록유도
  - 대형유통업체 등과 연계하여 안정적 판로 확보
- 생산자단체는 관할 시·군에 거세사업 협조단체 지정 신청
  - 사업계획서와 사업참여 농가명단을 시·군에 제출

#### 5. 2004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안내

- '03. 6. 30까지 사업실시후 '04.7월부터 품질고급화장려금으로 전환하여 사업 추진
- 사업추진체계: 별도시달
  - 지원대상: 도체성적 1등급이상 출현된 한우 거세우

